

하동요양원 운영규정 개요

제1장 총칙	제2장 조직 및 업무분장	제3장 인사	제4장 인사위원회
제5장 신분보장	제6장 복무	제7장 근무	제8장 휴가
제9장 당직근무	제10장 출장	제11장 전보 및 사무인계	제12장 자질향상훈련
제13장 직장내성희롱예방 및 모성보호	제14장 복리후생 및 경조사비	제15장 재해보상	제16장 임금
제17장 예산 및 회계	제18장 계약	제19장 자산회계	제20장 결산
제21장 후원금 관리	제22장 재무감사	제23장 물품관리	제24장 입.퇴소자 관리
제25장 문서관리	제26장 운영위원회	제27장 개정	

제24장 입.퇴소자 관리

제256조[입소인원] 시설의 입소인원은 감독관청이 인가한 법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소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① 입소정원은 100인으로 한다.

제257조[모집방법] 모집방법은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, 홈페이지,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⋮

제259조[입소계약에 관한 사항]

① 이용계약기간

1.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공단으로부터 발행 받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한다. 단,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제2항 해당 되지 않는 한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합의한다.

2.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, 장기요양등급 변동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계약의 목적

입소자가 희망하는 계약기간 동안 심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으로 한다.

③ 이용료

1. 월 이용료

장기요양등급	1일 급여	월 급여(31일기준)	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1등급	81,750원/일	2,534,250	무료
2등급	75,840원/일	2,351,040	
3,4,5등급	71,620원/일	2,220,220	

2. 기타 비용 부담액

가. 급여대상자의 식사재료비

(1일 식재료비 : 7,000원(간식비 포함)로 한다.

나. 급여 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상급침실 사용료

다. 이·미용비(자원봉사에 의한 이·미용서비스는 제외)

라.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

마. 급여대상자의 여가활동(영화감상 등)에 소요되는 비용 발생 시 청구 할 수 있다.

⋮

제267조[의료서비스 처리절차]

① 간호(조무)사의 활동사항

1. 간호(조무)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.

2.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, 체중, 혈압, 체온,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

1.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.

2.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(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)를 취한다.

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

1.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,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2.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

가.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.

나.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.

다.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3.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

가.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

나.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,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.

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

1.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.

⋮

제268조[시설물]

① 본 요양원의 건축물, 기구, 기타 조작용물 및 식당, 욕실, 휴게실, 물리 치료실, 기타 공동서비스시설에 대하여는 본 요양원의 관리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용하는 것으로 한다.

② 을은 갑이 지정하는 거실 및 침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침대나 보조기구의 사용을 원할 시는 본 요양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. 또한 심한 치매로 인하여 기계 기구의 파손의 우려와 반복되는 자해행위가 있을 시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별실에 보호할 수 있다.

시설급여의 종류

1. 노인(전문)요양시설 수가는 등급별 1일당 정액제로 한다.
2. 노인(전문)요양시설수가는 간병·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, 영양관리, 간호, 기능훈련 및 기타 복지서비스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.
3.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%를 산정하되 최대 10일까지 산정한다.
4. 시설서비스수가에는 상근의사(축탁의포함)가 시설내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투약 및 처치 등의 소요비용이 포함되어 있다.
5.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입소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%를 본인이 부담한다.
 -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가.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다만,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.
 - 나.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입소시설 서비스는 8%를 본인이 부담 한다.

구분		31일 기준	30일 기준	28일 기준
1등급	장기요양급여	2,534,250	2,452,500	2,289,000
	공단부담금	2,027,400	1,962,000	1,831,200
	본인부담금(20%)	506,850	490,500	457,800
	장기요양 비급여	217,000	210,000	196,000
	본인부담금 총액	723,850	700,500	653,800
2등급	장기요양급여	2,351,040	2,275,200	2,123,520
	공단부담금	1,880,830	1,820,160	1,698,810
	본인부담금(20%)	470,200	455,040	424,700
	장기요양 비급여	217,000	210,000	196,000
	본인부담금 총액	687,200	665,040	620,700
3,4,5 등급	장기요양급여	2,220,220	2,148,600	2,005,360
	공단부담금	1,776,170	1,718,880	1,604,280
	본인부담금(20%)	444,040	429,720	401,070
	장기요양 비급여	217,000	210,000	196,000
	본인부담금 총액	661,040	639,720	597,070

구분	은행	계좌번호	예금주
월 이용료	농협	351-1259-0388-63	하동요양원

비 급 여 항 목

1. 아래의 비 급 여 항 목에 대하여는 급여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.
 - 가. 급여 대상자의 식사재료비(1일 식재료비 7,000원 **간식비 포함)
 - 나. 이·미용비 - 무료
 - 다.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1,2인실 사용료
 - 라. 급여 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
 - 마. 급여 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여가활동(영화감상 등)에 소요되는 비용
2. 당월 분 본인부담금 총액은 당월 10일까지 선납부하여야 한다.

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

☐ 연도별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비용

<2019년 ~ 2023 년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>
(단위 : 원)

구 분		수급자 본인부담금			
		일 반 (20%)	감경대상자 (12% / 8%)	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(8%)	기초생활수급 자 (0%)
'23 년	초 진 (17,320)	3,460원	2,070원 / 1,380원	1,380	0
	재 진 (12,380)	2,470원	1,480원 / 990원	990	0
'22 년	초 진 (16,970)	3,390	2,030/1,350	1,350	0
	재 진 (12,130)	2,420	1,450/970	970	0
'21 년	초 진 (16,480)	3,290	1,310 / 1,970	1,310	0
	재 진 (11,780)	2,350	940 / 1,410	940	0
'20 년	초 진 (16,140)	3,220	1,290 / 1,930	1,290	0
	재 진 (11,540)	2,300	920 / 1,380	920	0
'19 년	초 진 (15,690)	3,130	1,250 / 1,880	1,250	0
	재 진 (11,210)	2,240	890 / 1,340	890	0